

#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934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1. 10. 15.
4. 회부일자 : 2021. 11. 1.

### 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조성하기 위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III. 주요내용

1. 기금 설치개요
  - 설치년도 : 2016년
  - 주요내용

(단위: 천원)

구분	'21년도 말 조성액(a)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 말 조성액 (d=a+b-c)
		수입(b)	지출(c)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77,878,662	26,780,753	42,931,003	61,728,412

#### IV. 참고사항

1.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합 의: 해당사항 없음

4.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계획안은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934호로 제출되어 2021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건립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기금총괄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설치된 것입니다.
- 당초 동 기금은 2016년에 조성되어 2020년 말까지 존속예정이었으나 신청사 건립 사업규모의 증가 및 사업기간의 연장, 연수원 기본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말까지 5년간 연장되었습니다.
- 한편 2022년도 동 기금의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61억 6천 9백만원과 예치금 회수 778억 7천 9백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6억 1천 1백만원 등 총 1,046억 5천 9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관운영관리(비용자성사업비) 429억 3천 1백만원 및 예치금 617억 2천 8백만원 등 총 1,046억 5천 9백만원입니다.

[표-1] 기금수지 총괄

(단위: 천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수입항목	'22년 수입액 (A)	'21년 수입액 (B)	증 감 (C=A-B)	지출항목	'22년 지출액 (A)	'21년 지출액 (B)	증 감 (C=A-B)
합 계	104,659,415	80,925,098	23,734,317	합 계	104,659,415	80,925,098	23,734,317
교특회계 전입금	26,169,346	20,112,459	6,056,887	기관 운영관리 (비용자성 사업비)	42,931,003	3,046,436	39,884,567
예치금 회수	77,878,662	59,937,639	17,941,023	기본 경비	-	-	-
이자수입	611,407	875,000	△263,593	예비비 및기타 (예치금)	61,728,412	77,878,662	△16,150,250

나. 수입계획

- 2022년도 동 기금의 수입계획은 1,046억 5천 9백만원으로, 이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보통교부금 192억원 과 수색동 토지매각 비용 48억 2천 2백만원, 기타매각 비용 21억 4천 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먼저 보통교부금 192억원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교육부로부터의 지원금 성격의 예산으로 당초 교육부는 276억원을 교부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중앙투자심사 조건 불이행으로 인해 당초 교부예정액의 반액인 138억원만 교부되었고, 그 후 조건 이행에 따라 192억원<sup>1)</sup>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1)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변경에 따라 당초 추가 예정 교부액(138억원)보다 54억원 많은 192억원 교부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변경 내용]

년도	교부기준	교부액	비고
2021	표준연면적(33,355㎡)	276억 원	
2022	건축연면적(39,937㎡)	330억 원	'21년 대비 54억 증액

※ (교육부) 청사 신설.이전비 교부기준

·2021년(기준) 33,355㎡(표준연면적)×2,762원(단가)×30%(적용률) = 27,637,953천원

·2022년(변경) 39,937㎡(건축연면적)×2,762원(단가)×30%(적용률) = 33,091,798천원

- 다음으로 수색동 토지매각 비용 48억 2천 2백만원 및 천연동 3억 9천 5백만원은 전년도 수입계획상 금년에 토지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매각 협상 및 매수 진행 지연으로 토지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50억 9천 9백만원이 다음연도 수입계획에 계상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처럼 토지매각의 지연으로 인해 수입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토지매각과 관련된 법적 절차 및 매각 협상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기타매각 비용 21억 4천 8백만원은 동대문구 전농동 45-43 등 11곳의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은 토지 매각에 있어 매각대금이 타당한지 분납에 따른 징수가 적절한지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 불필요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 매각함으로써 교육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sup>2)</sup>

**[표-2] 2022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수입계획**

(단위: 천원)

징 관 항	목	'22년 수입액 (A)	'21년 수입액 (B)	증감 (C=A-B)
[50000]내부거래		26,169,346	20,112,459	6,056,887
	[51000]전입금	26,169,346	20,112,459	6,056,887
	[51100]전입금	26,169,346	20,112,459	6,056,887
	[51102]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6,169,346	20,112,459	6,056,887
[40000]기타		77,878,662	59,937,639	17,941,023
	[42000]예치금회수	77,878,662	59,937,639	17,941,023
	[42100]예치금회수	77,878,662	59,937,639	17,941,023
	[42101]예치금회수	77,878,662	59,937,639	17,941,023
[20000]자체수입		611,407	875,000	△263,593
	[24000]이자수입	611,407	875,000	△263,593
	[24100]이자수입	611,407	875,000	△263,593
	[24101]예금이자수입	611,407	875,000	△263,593
	<b>수입 합계</b>	<b>104,659,415</b>	<b>80,925,098</b>	<b>23,734,317</b>

2) 붙임자료 참조.

- 결론적으로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은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의 수입계획 작성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지출계획**

- 2022년도 동 기금의 지출계획은 총 1,046억 5천 9백만원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시설비 및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 등 건설비(비용자성사업비) 429억 3천 1백만원과 예치금 617억 2천 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는 전년도 신청사 건립비용 30억 4천 6백만원 보다 398억 8천 5백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지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2021년의 경우 2019년 중앙투자심사 결과 이행조건 충족을 위하여<sup>3)</sup> 사업규모 축소를 위한 설계 및 공사 계획 변경이 변경되면서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었는바, 그동안 지연된 제반 공사를 2022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원만한 사업추진과 동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4조<sup>4)</sup>에 따른 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3) ‘2019년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5823(2019.10.1.)]’ 사업비 및 사업규모 축소해야 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사업비는 축소하고 사업규모는 축소하지 못해 2020년 중앙투자 심사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되어 교부금 등이 감액 조정됨.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3월부터 사업규모 축소를 위한 설계 및 공사 계획을 변경하였고, 2021년 당초 398억 8천 5백만원으로 계획했던 지출액을 30억 4천 6백만원으로 대폭 감소됨.

사업명	결과	부대 의견
서울교육청 청사이전	조건부	사업비 및 사업규모 축소

4)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

**[표-4] 2022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지출계획**

(단위: 천원)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22년 지출액 (A)	'21년 지출액 (B)	증감 (C=A-B)
					[050]교육	42,931,003	3,046,436	39,884,567
					[054]교육일반	42,931,003	3,046,436	39,884,567
					[02]기관운영관리	42,931,003	3,046,436	39,884,567
					[02]교육행정기관시설	42,931,003	3,046,436	39,884,567
					[01]본청시설관리(신청사건립)	42,931,003	3,046,436	39,884,567
					설계비	13,784	234,300	△220,516
					시설비	41,078,455	1,368,464	39,709,991
					감리비	1,638,764	1,350,965	287,799
					시설부대비	200,000	92,707	107,293
					[03]직속기관시설관리(연수원건립)	0	0	0
					토지매입비	0	0	0
					[160]예비비	61,728,412	77,878,662	△16,150,250
					[161]예비비	61,728,412	77,878,662	△16,150,250
					[01]예비비및기타	61,728,412	77,878,662	△16,150,250
					[01]예비비및기타	61,728,412	77,878,662	△16,150,250
					[03]내부유보금	61,728,412	77,878,662	△16,150,250
					예치금	61,728,412	77,878,662	△16,150,250
					<b>지출 합계</b>	<b>104,659,415</b>	<b>80,925,098</b>	<b>23,734,317</b>

○ 다만 동 기금의 연도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매년 계획 대비 집행율이 향상되고는 있으나 2020년의 경우에도 그 집행률은 79.27%로 매우 미흡한 수준인바,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사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표-5]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천원)

연도	계획대비 지출액 <sup>5)</sup> 집행실적		
	계획 <sup>6)</sup> A	집행실적 B	집행률 (B/A*100)
2017	308,000	43,898	14.30%
2018	3,292,000	967,182	29.38%
2019	5,343,000	3,500,484	65.52%
2020	4,625,530	3,667,093	79.27%

- 한편 연수원 건립기금은 2016년 기금 조성 때부터 2022년까지 7년동안 지출계획이 0원으로, 연수원 건립 장소에 있어서는 제주도에 서 강원도 평창으로, 연수원 명칭에 있어서는 ‘서울가족을 위한 회복력지운 연수원’에서부터 ‘제주평화힐링연수원’, ‘교직원 치유·회복 연수원’으로 잦은 변경이 있었기 때문이나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자체재정투자의 재검토 및 조건부 승인, 중앙투자심사 부적정<sup>7)</sup>(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등으로 인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 특히 2020년도의 경우 동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실적이 전무했던 연수원의 추진 여부에 대해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의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연수원 건립 추진 의지 표명을 반영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해준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당시 2021년에 실시하기로 했던 연수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재정투자심사 등의 사전 절차조차 시행하지 않았는바, 서울시교육청의 연수원 건립의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연수원 건립을 위해 동 기금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연수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동 기금의 지출계획에 계상하지 않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편성하는 등 동 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

5) 지출액은 예치금 및 사고이월액 제외.

6) 당해 연도 최종 변경계획안 금액.

7) ‘2019년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5823(2019.10.1.)

사업명	결과	부대 의견
서울교육청 청사이전	조건부	사업비 및 사업규모 축소
제주평화힐링 연수원 설립	부적정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은 상황입니다.8)

- 따라서 이와 같이 연수원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미흡 및 사전 절차 이행 지연, 기금의 지출계획 미수립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교육비특별회계 내에 편성되어 있는 연수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동 기금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6] 2021년도 연수원 건립 계획

추진 및 향후일정	추진내용
2021.1~2021.5.	타당성조사용역
2021.7~2021.12	재정투자심사(자체, 교육부), 공유재산심의회 및 관리계획 심의
2022.1~2022.3.	군관리계획 변경 및 토지매입, 디자인 컨셉트 개발 및 공간 구상에 대한 의견수렴
2022.1~2022.12	설계 공모 및 설계 용역
2023.2	건축인·허가
2023.7	공사 계약(입찰)
2023.9~2025.8	공사 착공 및 준공
2025.9~2025.10	운영 준비 및 개관

-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는 연수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붙임]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공유재산 처분 내역)**

(단위 : 천원)

번호	구분	재산명 또는 소재지	면적 (㎡)	납부자명	납부구분	2022년 기준 분납회차	처분 (예정) 금액	2022년도 징수 예정액
1	매각	동대문구 전농동 45-43	34.5	이○○	분납	20회차 중 15회차	135,240	6,086
2	매각	동대문구 휘경동 302-9	15	윤○○	분납	10회차 중 6회차	44,545	4,009
3	매각	북아현동 3-489	20	김○○	분납	10회차 중 7회차	63,051	5,675
4	매각	천연동 116	75	서대문구청	일시납	-	277,650	277,650
5	매각	수색동 129-2 외	1,448	수색7구역 조합	일시납	-	4,821,840	4,821,840
6	매각	신수동 371-28	89	정○○	분납	10회차 중 6회차	660,057	59,405
7	매각	동작구 흑석동 245-1	376	흑석9구역정 비사업조합	미정	-	1,981,520	1,783,368
8	매각	성북구 삼선동3가 50-7	40.7	김○○	분납	20회차 중 19회차	6,992	2,331
9	매각	성북구 삼선동3가 50-50	49	손○○	분납	20회차 중 19회차	7,892	2,631
10	매각	성북구 삼선동3가 50-49, 성북구삼선동3가 50-51	49.3	최○○	분납	20회차 중 19회차	7,741	2,580
11	매각	강북구 미아동 791-4809	12	공○○	분납	5회차 중 4회차	15,087	3,771
<b>계(12필지)</b>							<b>8,021,615</b>	<b>6,969,346</b>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8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16.12.29.] [서울특별시조례 제6362호, 2016.12.29., 일부개정]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대금
2.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